

의안번호	제 28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8월 28일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박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
----------	----

발의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발 의 자 : 박문희·박우양·임영은·이상식·
이상정·하유정·황규철 의원(7인)

1. 제안 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4조)
- 수출중소기업의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안 제5조)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안 제6조)
-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휘·감독 및 조치 규정(안 제8조)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보조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5. 예산조치 : 불 입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18.7.25 ~ 2018.8.13.(2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시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무역통상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등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상공회의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애로사항 청취) ① 도지사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애로사항을 청취할 경우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①항에 의하여 위탁, 대행하여 운영할 때에는 해외 시장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수출 촉진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시책 운영에 따른 제비용

3. 관련조문

- 안 제7조(협약의 체결 등) 제2항
 -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및 수출기업화 추진 지원 경비(무역사절단·전시회·상담회 및 무역보험 등)
- 나. 추계의 전제 : 전시상담장 임차, 바이어 섭외, 통역 등
- 다. 추 계 결 과 :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세출 35,000백만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40%, 도비 6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출	35,000,000	6,000,000	6,500,000	7,000,000	7,500,000	8,000,000
시책추진사업비	35,000,000	6,000,000	6,500,000	7,000,000	7,500,000	8,000,00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 정진원(220-346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5. 그 밖에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